예 산 총 칙

2023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38,952,060	16,168,562
일반회계	517,302,230	15,519,067
특별회계	21,649,830	649,495
기타특별회계	21,649,830	649,495
상수도특별회계	13,906,556	417,197
자활기금특별회계	153,410	4,60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37,216	19,116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	3,680,562	110,417
장기미집행시설특별회계	150,285	4,509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3,111,042	93,331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0,759	323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182,734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56억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단서 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3) 재해대책 및 복구비
(4) 동일부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